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인력의 인건비, 수당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의사 집단행동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특례 마련(안 제75조의2)

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재난관리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 확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2 중 “복구를”을 “복구,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(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)으로 사용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의2(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)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취약계층에 대한 지원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·태풍 피해 <u>복구</u> 를 위한 지방재원(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)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.	제75조의2(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복구, 의사 집단행동</u> <u>으로 인한 「의료법」 제3조제2</u> <u>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</u> <u>원급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</u> <u>유지를</u>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4124